

개인연금주식투자신탁약관6호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위탁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수탁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을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에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4. “판매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법 제 10 조 제 1 항 제 2 호의 수익증권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익권”이라 함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에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에 대한 권리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권,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6. “수익증권”이라 함은 제 5 호의 수익권을 증권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모집”이라 함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기전 향후 발행될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출”이라 함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8. “매각”이라 함은 모집에 의해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발행된 수익증권을 판매하

거나 또는 매출에 의해 이미 발행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환매”라 함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매각한 수익증권을 수익자의 청구에 의해 재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재매각”이라 함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재매입한 수익증권을 다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준가격”이라 함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간의 수익증권매매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10.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발생)

①이 약관은 위탁회사가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또는 매입한 때에 이 약관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업무)

①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및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수탁회사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한다.

②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위탁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의 보관등 투자신탁재산의 관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위탁회사의 지시가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감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신탁의 원본 및 수익권좌수)

①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1천만원으로 하고, 수익권의 좌수는 1천만좌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시기 및 규모등은 수익증권의 매각상황등을 고려하여 위탁회사가 정한다.

제 6 조 (투자신탁의 설정)

- ①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위탁회사는 제 5 조 제 1 항의 투자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모집에 의해 받은 청약금으로 수탁회사에 납입하거나,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수탁회사에게 납입한다.
- ②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회사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을 하는 날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제 2 항의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 ④이 투자신탁을 매출방식에 의하여 설정하는 때의 최초의 수익자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로 한다.

제 7 조 (투자신탁계약기간)

- ①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투자신탁회계기간)

- ①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②제 1 항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회계기간 말일의 기준가격이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의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을 차기로 연장할 수 있다.
- ③제 1 항 본문규정에 의한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이하 “이익분배금”이라 한다)은 제 25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9 조 (수익권의 분할)

-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 (수익증권의 발행)

①수익증권은 금감위에 신고하여 수리된 후 위탁회사가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의 주요내용등을 기재하고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익증권은 책형으로 발행한다.

제 11 조 (수익증권의 매각)

①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환매로 인하여 소유하게된 수익증권을 재매각할 수 있다.

②수익증권의 매각가격은 모집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모집에 의하여 받은 청약금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매출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또는 환매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수익증권을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재매각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12 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신탁안정조정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세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제 1 항의 기준가격계산시 유가증권의 평가는 관계법령 및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매도실행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정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위탁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유가증권등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한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한다.

④위탁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게시하며 제 31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회사의 해산·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의 자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④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의 소유기간별로 이익금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 1. 2 년미만 : 1,000 좌당 20 원
- 2. 2 년이상 5 년미만 : 1,000 좌당 10 원

제 14 조 (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

①수익자는 "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이하 "수익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수익증권저축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하는 수익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매입한 수익증권을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저축금의 납입 및 수익증권의 내역을 증명하는 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한다.

④수익증권저축의 종류·방법등 세부사항은 위탁회사가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약관"(이하 "저축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저축자는 저축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수료의 면제등 우대를 받을 수 있

다.

제 15 조 (수익증권의 상장)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상장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한다.

1. 주식(장외주식을 포함한다)에의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50%이하. 다만, 장외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20%이하로 한다.
2.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를 포함한다) 및 수익증권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 다만,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 사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3%이하,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5%이하,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5%이상으로 한다.
3. 파생상품에의 투자 : 제8항의 범위내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개월, 투자신탁계약해지일 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이전 1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 제 1 호에서 "주식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③ 제 1 항 제 1 호에서 "장외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5 항에서 규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말한다.

④ 제 1 항 제 2 호에서 "채권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⑤ 제 1 항 제 2 호 단서조항에서 "사모사채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것
2.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A등급이상인 것

⑥ 제 1 항 제 2 호 단서조항에서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2. 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 제 1 항 제 2 호 단서조항에서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
2.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또는 상호신용금고가 발행·보증·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를 매입하거나, 증권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가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매입
3. 투자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 이내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4.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방법

⑧ 제 1 항 제 3 호에서 "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과 선물거래법 제 3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해외선물 포함)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거래에 한한다.

제 17 조(투자신탁재산 운용상의 제한)

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중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국채·지방채·통화안정증권,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증한 공모채권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재산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2. 위탁회사가 운용을 지시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3. 위탁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투자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4.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한 유가증권을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하는 유가증권 등의 거래
6. 위탁회사가 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 행위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과다취득행위등 수익자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위탁회사가 그 총신탁재산으로 전체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주식을 제외한다)에 계열회사 전체의 당해 위탁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재산의 2%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행위

②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금감위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다.

제 18 조 (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위탁회사보수와 수탁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6 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의 인출에 한한다) 또는 전부해지

③위탁회사보수는 보수계산기간중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신탁안정조정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잔액(매일의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 1,000 분의 14.0 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위탁회사가 취득하고, 수탁회사보수는 보수계산기간중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연 1,000 분의 0.5 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수탁회사가 취득한다.

제 19 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②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제 20 조 (손익의 귀속)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21 조 (신탁안정조정금 적립 및 사용)

- ①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 운용수익금중 일부를 이 투자신탁 내부에 신탁안정조정금(이하 “조정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
- ②조정금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이후의 누적운용수익률이 적립기준율을 초과하는 날에 당일 추가로 발생한 운용수익금의 10/100 을 적립한다. 다만, 당일의 조정금 적립후 누적운용수익률이 적립기준율을 하회할 경우에는 조정금적립후 누적운용수익률이 적립기준율을 하회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적립한다.
- ③제 2 항의 누적운용수익률과 적립기준율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누적운용수익률

$$\frac{n-1}{k=1} [\Pi (1+D_k) \times \{1 + \text{당일의 신탁재산 운용수익률(조정금 적립전)}\}] - 1$$

2. 적립기준율

$$(1 + \text{전일의 적립기준율}) \times (1 + R)^{1/365} - 1$$

3. Dk : k일의 신탁재산 1일 운용수익률(조정금 적립후)

n : 최초설정일 이후 당일까지의 경과일수

R :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기준수익률(매월마다 직전월의 최종영업일의 수익률을 적용)

④조정금은 이 투자신탁 원본액의 30/100 까지 적립한다.

⑤증권시장의 침체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적립된 조정금을 신탁재산 운용수익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⑥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한 조정금의 사용은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 조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①위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때
2.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 수익증권이 재매각되지 아니한 때.
3.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때

②이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금액의 산정 및 인출에 관하여는 제 6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따라 수익권의 총좌수가 10 억좌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31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다.

제 24 조 (미수수입금등의 우선충당)

①위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에 미수수입금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청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해당자금을 우

선충당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우선충담금의 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5 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

①수탁회사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상환금등을 위탁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위탁회사에게 인도한다.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위탁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위탁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이익분배금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이 투자신탁에 재투자(이익분배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상환금등은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 월이내에 속하는 날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

제 26 조 (상환금등의 시효)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10 년간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상환금등은 위탁회사에게 귀속된다.

제 27 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투자신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회계기간이 종료되는 때
2. 투자신탁계약이 해지되는 때
3. 기타 위탁회사가 요구하는 때

제 28 조 (약관의 변경)

①위탁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금감위는 공익 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회사에게 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회사는 약관을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이를 영업점포내에 1 월이상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31 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 3 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수익자가 이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 3 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대하여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 29 조 (위탁회사의 영업양도)

①위탁회사는 수탁회사와 협의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다른 위탁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위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1 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내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것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31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이 투자신탁에 관한 위탁회사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의서 제출기간내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서 제출 및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없는 수익자는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서를 제출하고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대하여는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 30 조 (수탁회사의 변경)

①수탁회사가 그 업무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수탁회사가 그 업무를 사임하는 경우에 위탁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수탁회사에게 합병, 전환, 영업의 양도, 제 3 자에 의한 인수 또는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위탁회사는 수탁회사의 사임에 따라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⑤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경우에 위탁회사는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31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수익자에 대한 공고)

위탁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제 32 조 (관계법령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 (관할법원)

위탁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1999 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위탁자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사 장 변 형



수탁자 주식회사 서 울 은 행

대표이사

은 행 장 신 복 영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6호 약관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6호 약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0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비과세고수익투자신탁으로의 대체)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약관 제 16 조(수익증권의 환매)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여 즉시 비과세 고수익투자신탁으로 대체 가입(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체가입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대체가입한 수익자가 비과세고수익투자신탁의 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경우 본문에 의거 유보받은 환매수수료를 청구한다.

위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조영제



수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주식회사 서울은행

은행장 강정원



POWER KOREA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6호 약관

POWER KOREA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6호 약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 (투자신탁재산운용의 제한) 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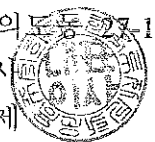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에 한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제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6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6월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위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조영제



수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주식회사 서울은행
은행장 강정원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6 호 약관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6 호 약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비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유가증권등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장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이하 “채권가격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2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2. 기업어음등 :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채권 기준수익률
3. 양도성예금증서(CD) :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

④ 위탁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수탁회사에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사무수탁회사는 기준가격을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3.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4.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5. 유가증권예탁비용
6. 유가증권등의 가격정보 비용
7.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조영제



수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주식회사 서울은행
은행장 강정원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6호 약관

개인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6호 약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6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유가증권등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의 총액의 50%이내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제4호에서 “유가증권등의 대여”라 함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위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유병득



수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주식회사 서울은행
은행장 강정원

